

영등포구의회  
제146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09. 7. 2.



行 政 委 員 會

(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고기판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제정이유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구청장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구청장은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헌혈권장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 홍보 활동을 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 준수 의무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 ■ 타 자치단체 사례

- 광역시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 서울시 자치구 : 강서구, 노원구
- 기초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서구, 안산시, 가평군, 청주시, 전주시, 군산시,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0조(시행규칙)까지의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헌혈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는 헌혈 장려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의무조항으로 두었으며

안 제6조는 헌혈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에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타 자치단체 사례는

광역시와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6곳

서울 자치구가 강서구와 노원구

기초자치단체가 광주광역시 서구를 포함 9곳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구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증진을 통해 원활하고 안정적인 혈액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7. 2.

보고자 : 권 오 운

# 관 계 법 령

##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제2조 (헌혈의 권장)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08.2.2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혈  
권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  
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1.29>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  
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  
할 수 있다.<개정 2008.2.29>